



I. 문제제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증가는 가용재원의 잠식은 물론 재정위험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원인은 2005년도 이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과 더불어 정부가 복지정책의 강화 내지는 확대를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의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계에서는 중앙과 지방간 사회복지 기능 및 사업의 기준설정과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재원분담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과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되기 이전인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총지출에서 11.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20.2%로 무려 2배 정도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비의 팽창에 따른 지방의 부담이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분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지방예산기준으로 사회복지경비의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 52.6%, 시도비 27.3%, 시군구비 20.1%로 분담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 분담구조가 53% 대 47%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사회복지지출의 국·시도·시군구비 구성(2011년도)

(단위: 억원, %)

구분	계	국비 (A)	시도비 (B)	시군구비 (C)	비중		
					A	B	C
□ 사회복지	284,632	149,668	77,640	57,324	52.6	27.3	20.1
· 기초생활보장	90,710	68,980	15,369	6,361	76.0	16.9	7.0
· 취약계층지원	38,873	14,269	16,794	7,808	36.7	43.2	20.1
· 보육·가족및여성	67,372	28,458	19,987	18,927	42.2	29.7	28.1
· 노인·청소년	68,791	34,918	15,678	18,195	50.8	22.8	26.4
· 노동	6,313	1,647	2,173	2,494	26.1	34.4	39.5
· 보훈	1,606	104	370	1,132	6.5	23.0	70.5
· 주택	7,553	288	6,517	748	3.8	86.3	9.9
· 사회복지일반	3,415	1,004	752	1,659	29.4	22.0	48.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수준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OECD 국가, 미국사례, 일본사례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복지재정의 개념·정책영역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추진사업의 개요와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외국의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에 초점을 두고 운영 실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분담방향에 대하여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복지재정의 정의와 정책영역

1. 복지재정의 정의

복지재정이란 빈곤, 질병, 장애, 소득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유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상이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뒷받침하는 재원조달 및 지출계획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0:26). 복지재정은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정지출로 일컫기도 한다. 사회복지비를 광의로 해석하면 복지적 의미를 갖는 모든 사회적 시책, 즉 교육, 의료, 소득보장,

보건·위생, 주택정책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장도 포섭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정책을 보면 사회복지와 보건을 분리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범주에 사회보장 정책이 포함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4-6).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복지재정은 보건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을 말한다.

IMF 통합재정통계의 정부지출 산출기준에서 ‘보건’ 과 ‘사회보장 및 복지’ 지출이 복지재정지출에 해당된다.¹⁾ 복지재정지출은 OECD 사회지출 분류 중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이 해당된다. OECD의 사회지출에는 공공사회지출, 민간법정사회지출, 민간임의사회지출이 있다. 공공사회지출은 사회복지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과 노령연금, 건강보장, 실업급여 등이며, 민간법정사회지출은 고용관련 기업의 법정급여로 법정퇴직금, 질병유급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이고, 민간임의지출은 민간단체의 공동모금,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기업의 자발적 복지 등이 해당된다(고경환, 2011:1).

IMF와 OECD의 복지재정지출 통계는 UN의 정부기능분류(UN-COFOG :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 체계를 준수하고 있다. IMF의 GFS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보건지출은 개인적 차원의 지출과 집합적 차원의 지출로 구분하며, 전자는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출로 입원, 외래, 공공보건 등이고, 후자는 보건의료정책 수행 및 행정 관련 제반 지출,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출 등이다. 사회복지지출 또한 개인·가구적 차원의 지출·이전소득과 집합적 차원의 복지서비스 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자는 장애, 육아, 노년층 지원, 실업대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지출이고, 후자는 사회복지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IMF, 2008:97-110).

〈표 2〉 UN의 『10대 정부기능분류(COFOG)』 체계

01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07 보건(Health)
02 국방(Defence)	07.1 의료제품, 기기및장비 (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
03 공공질서및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07.2 외래환자서비스(Outpatient services)
	07.3 병원서비스(Hospital services)
04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07.4 공중보건서비스(Public health services)
	07.5 R&D 지원(R&D health)
	07.6 보건 정책(Health n.e.c.)

1) IMF GFS(재정통계 매뉴얼, 통합재정기준)의 기능별 세출예산분류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및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및복지, 주택건설·지역사회개발, 여가·문화·종교, 연료및에너지, 광업·제조업·건설업, 교통및통신, 기타경제사업, 기타지출의 14개로 분류하며 모든 국가에서 통합재정기준으로 세출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05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08 여가, 문화 및 종교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06 주택및지역사회개발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09 교육(Education)
- 주택공급(Housing development)	10 사회복지(Social protection)
-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10.1 질병·상해와 장애(Sickness and disability)
- 상수도(Water supply)	10.2 노년층지원(Old age)
- 도로조명·유지보수(Street lighting)	10.3 보훈(Survivors)
- R&D지원(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10.4 육아및자녀부양(Family and children)
- 주택및지역사회시설 정책(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n.e.c.)	10.5 실업대책(Unemployment)
	10.6 저소득층 주거안정(Housing)*
	10.7 사회적약자·취약층(Social exclusion n.e.c.)
	10.8 R&D 지원(R&D social protection)
	10.9 사회복지 정책(social protection n.e.c.)

주 : * 사회복지에 속하는 Housing(주거안정)은 자산조사에 근거를 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의 Housing(주택건설)과는 다른 것이다.
자료 : UN,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홈페이지 참조

2. 복지재정의 정책영역

복지재정의 정책유형은 첫째로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지원 등의 사회보험제도 운영, 둘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보훈 관련 각종 수당 등의 공적부조, 셋째로 보육, 돌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회서비스라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26-28; 이재원, 2011:7-9).

또한 복지재정의 정책영역을 사회안전망의 개념에 비추어 1~3차 안전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예산정책처, 2010:27-28). 1차 안전망은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의 기여(보험료 부과)를 토대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급여가 제공된다. 2차 안전망은 부담능력이 없어서 1차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되며 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여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이 운영된다. 3차 안전망은 근로여건이 취약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요건의 부적격 등으로 1, 2차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빠진 계층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긴급 복지사업 등이 제공되는 영역이다.²⁾ 보육, 일자리대책, 돌봄서비스, 직업 훈련 등 예산과 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회서비스는 광의의 3차 안전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들 모두가 복지재정의 지출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3차 안전망은 대상은 1차 안전망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자격기준 상 2차 안전망이 공적부조 수급권자도 아닌 근로빈곤계층(working poor)으로,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없으면 국가의 부조대상으로 추락하여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국정의 핵심과제인 '서민을 위한 정책수행'의 우선 영역이 이 범주의 '일하는 빈곤층'이라고 한다(국회예산정책처, 2010:28)

III.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범위와 사업

1.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은 기능별 세출예산분류 체계에 근거하면 중앙정부 복지재정에 해당하는 12개 부문 중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을 제외한 보건분야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의 2개 부문과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 보육·여성·가족, 노동, 보훈, 주택, 일반사회복지의 8개 부문 총 10개 부문이 해당된다.

지방의 복지재정은 1991-1995년 동안은 사회복지비로 보건과 복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1996-2007년 동안은 사회개발비로 교육·문화·생활환경개선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보건 부문 외 사회복지보장 부문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앙정부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되고 각각 중앙정부의 분류체계를 따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범위는 13개 사업별 기능 분류 중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가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보건 분야를 제외한 사회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한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분류와 복지재정 범위

1991-1995년도	1996-2007년도	2008년도 이후
1000 의회비 2000 일반행정비	1000 일반행정비	010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50 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70 환경보호
3000 사회복지비 3100 복지사업 3200 보건위생 ('94-' 95) 3300 환경녹지 공원녹지* 3400 청소사업*	2000 사회개발비 2100 교육및문화비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300 사회복지비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및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 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품안전

1991-1995년도	1996-2007년도	2008년도 이후
4000 산업경제비 5000 지역개발비 6000 문화및체육비	3000 경제개발비	100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중소기업 120 수송 및 교통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50 과학기술
4000 민방위비	4000 민방위비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160 예비비 900 기타

주: *1994~1995년 동안 사회복지비는 복지사업, 보건위생, 공원녹지·청소사업으로 분류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 년도를 참조하여 작성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범위 중 보건 분야를 제외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대상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장애인·부랑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 ③ 보육지원·여성복지·가족문화 등의 보육·가족및여성, ④ 노인생활 안정·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노인·청소년, ⑤ 근로자지원·고용안정·직업훈련 등의 노동, ⑥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과 사업의 보존, ⑦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주택, ⑧ 기타 사회복지의 8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부문별 주요 업무와 정책은 <표 4>와 같다.

<표 4>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업무와 정책 유형

부문	해당 업무	정책 유형
기초생활보장	■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 장애인·불우아동 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복지회관운영(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제외(일반행정)) ■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 지역사회복지 ■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부랑인 보호 및 지원
보육·가족및여성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여성단체 지원 등 ■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 모·부자 복지 등	보육·가족 지원 여성 복지 증진

부문	해당 업무	정책 유형
노인·청소년	■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등 사회복지 ■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노동	■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 ■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등 ■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 고용안정, 고용안정용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 능력개발, 능력개발용자지원, 직업능력개발 ■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근로자 용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 ■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용자 ■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고용 촉진 및 안정 근로자 복지 증진
보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훈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 ■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 ■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위문 ■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훈 ■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숭모사업, 묘소단장사업 ■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주택	■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용자지원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주거 환경 개선 서민 주거 안정
사회복지일반	■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1. 5. 11. 행정안전부훈령 제 194호)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의 3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첫째, 지방양사업은 2005부터 추진되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의 복지정책을 지방에서 시행토록 하면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104개³⁾ 정도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및 확대에 따라 매년 그 사업수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자체사업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외에 순수한 지방의 수요 및 필요에서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재정력, 지역특성 및 지역수요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재정력과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사업과 규모가 많이 다르다.

〈표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유형과 재원부담

구분	사회복지 지방 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
사업유형	67개 사업(2005년 기준)	104개 사업(2010년 기준) (기초단체:시·도비보조사업)	자치단체별 자체사업
재원구조	분권교부세+대응지방비	보조금(국고/시·도비)+대응지방비	순수 자체재원

주 : *)는 2010년 기준 사회복지분야(보건분야 제외)의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66개 사업, 여성가족부 29개 사업, 기획재정부 5개 사업, 행정안전부 1개 사업, 노동부 3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기능이양사업 제외)임

가.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을 정책대상별로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한부모 가정복지, 노숙자지원복지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들이다. 그리고 사업 유형별로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소 생활시설운영, 비입소 시설이용, 복지 관련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급여(서비스) 지원, 관련 종사자 인건비, 기타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방이양사업은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지만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어 있는 분권교부세율(내국세의 0.94%)의 증가가 이를 따라라기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 재원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3) 사업이 세분화되어 국고보조율이 설정된 사업기준으로는 111개이다.

〈표 6〉 사회복지사업의 유형별 지방이양사업

	지방이양사업
생활시설 운영시설	·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 노인시설 · 아동시설, 모자복지시설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의료재활시설, 체육관, 시각장애인심부 름센터 및 재활지원센터, 청각장애수화통역센터,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해피콜봉사센터, 정보화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 노인: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치매상담센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 ·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시설설치 및 기능보강	〈기능보강〉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사회복지관 · 재가노인복지시설개보수 〈시설설치〉 · 노인복지회관 신축 ·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
서비스 (급여)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 노인일거리마련사업 ·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 결연기관PC구입비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 경로식당무료급식 · 노인건강진단 · 모자복지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 노숙자보호, 쪽방생활자지원
기타 프로그램 · 사업	· 편의시설설치시민축진단 · 소년소녀가장지원 · 결식아동급식 · 경로당활성화 · 가정위탁양육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인건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익근무요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나. 국고보조사업

2010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66개 사업, 여성가족부 29개 사업, 기획재정부 5개 사업, 행정안전부 1개 사업, 노동부 3개 사업의 총 104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이후 새로 신설 내지는 시행된 사업은 보건복지부 66개 사업 중 33개 사업, 여성가족부 29개 사업 중 15개 사업, 기획재정부 5개 사업 중 4개 사업, 행정안전부 1개 사업, 노동부 3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기능이양 사업 제외) 중 2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 104개 사업 중 54개 사업이 2005년도 이후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 후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강화에 따라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지방비부담 증가로 지방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2010년 기준)

사업명	개시년도	보조방법	보조율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1961	경상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장사시설 설치사업	1962	자본보조	70%
의료급여차치단체경상보조	1977	경상보조	서울 50%, 그 외 80%
교육급여	1979	경상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노인단체지원	1979	경상보조	서울 20%, 그 외 50%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981	경상, 자본보조	·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자본보조(50%) ·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 자본보조(30%) · 장애인생산물품판매시설운영 : 경상보조(40%), 자본보조(30%)
장애인보조기구지원	1982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
부랑인 복지지원	1985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70%
부랑인시설기능보강	1985	자본보조	50%
노인요양시설 확충	1986	자본보조	50%
주거급여	1989	경상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1989	경상보조	서울 30%, 지방 50%
장애수당	1990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70%
장애인 의료비지원	1990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990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
아동시설 기능보강	1990	자본보조	50%
보육돌봄서비스	1991	경상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영유아보육료지원	1991	경상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보육시설지원	1991	경상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1991	경상보조	서울 30%, 지방 50%(국민건강증진기금)
보육시설기능보강	1991	자본보조	5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차치단체 경상보조	1992	경상보조	100%
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	1995	경상보조	서울 20%, 그 외 50%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996	경상보조	서울 40%, 지방 70%
노인치매병원 확충	1996	자본보조	50%(국민건강증진기금)

특 집

지방재정의 실태분석

해산·장제급여	1997	경상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자활사업	2000	경상보조	서울 40~60%, 지방 70~90% (지역자활센터 운영 서울 50%, 지방 70%)
자활소득공제	2001	경상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2004	경상보조	70%
방과후돌봄서비스	2004	경상보조	서울 30%, 지방 50~70%
노인보호전문기관	2004	경상보조	50%
노인일자리사업지원	2004	경상보조	서울 30%, 그 외 50%
재활병원 건립	2004	자본보조	50%(국민건강증진기금)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2005	경상보조	40%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 지원	2005	경상보조	40%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	2005	경상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긴급복지지원	2006	경상보조	서울 50%, 그 외 80%
가정위탁아동상해보장	2006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7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006	경상보조	8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006	경상보조	서울 50%, 그 외 80%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2006	경상보조	100%
산모건강관리사업	2006	경상, 자본보조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50% 임산부아동건강관리 : 서울 30%, 지방 50% 난임부부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 서울 30%, 지방 50% 찾아가는 산부인과 : 50%(이상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	2006	경상보조	50%(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2006	자본보조	5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입양수수료지원	2007	경상보조	서울 40%, 지방 7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007	경상보조	서울 40%, 지방 70%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007	경상보조	서울 40%, 지방 70%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운영	2007	경상보조	서울 67%, 지방 100%
장애인사회활동지원	2007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70%
장애인일자리지원	2007	경상보조	30~80%
저출산고령사회극복 국민인식 개선	2007	경상보조	50%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2007	경상보조	서울 50%, 일반 70%, 신활력 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2007	경상보조	50~70%
노인일자리사업지원(제주)	2007	경상보조	50%(광특회계)

양곡할인	2008	경상보조	차상위양곡(정률보조)-서울50% 그 외 80%
			기초수급자양곡(정액보조)
기초노령연금	2008	경상보조	40~90%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	2009	경상보조	50%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2009	경상보조	서울 30~50%, 그 외 70%
농어촌지역 소규모보육서비스 제공	2009	경상보조	7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009	경상보조	서울 10~30%, 지방 40~60%
지역복지사업평가	2009	경상보조	100%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및 운영	2009	경상보조	5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	2010	경상보조	서울 40~60%, 그 외 70~90%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2010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70%, 신활력지역 80%
입양·가정위탁 심리치료지원사업	2010	경상보조	서울 40%, 지방 70%
중증장애인연금	2010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7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	1961	경상,자본보조	50~80%
한부모가족복지시설기능보강	1987	자본보조	50%
청소년시설확충	1990	경상보조	50%(광특회계)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994	경상보조	50~100%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1996	경상보조	50~60%(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유해환경개선	1998	경상보조	50%
청소년국제교류	1999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000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2001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2003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집결지 성매매자활지원사업	2004	경상보조	1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2004	경상보조	50~80%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히복 및 재발 방지사업	2004	경상보조	50~70%(여성발전기금)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2004	경상보조	서울 30%, 그 외 50%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2005	경상보조	50~100%
아동청소년참여지원	2005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005	자본보조	50~100%(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쉼터운영지원	2005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2007	경상보조	50~80%
아이돌봄지원사업	2007	경상보조	서울 30%, 그 외 70%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2007	경상보조	50%(청소년육성기금)
여성특화 IT 온라인 교육	2008	경상보조	100%(정책보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2008	경상보조	100%(정책보조)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009	경상보조	50~70%
가족역량강화지원	2009	경상보조	50%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지원	2010	경상보조	50~80%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	2010	경상보조	50~1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010	경상보조	서울 50%, 그 외 80%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2010	자본보조	서울 50%, 그 외 70%
〈기획재정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992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복권기금)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2005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복권기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2006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복권기금)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서비스	2007	경상보조	서울 50%, 지방 80%(복권기금)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	2010	경상보조	50%(복권기금)
〈행정안전부〉			
희망근로프로젝트	2009	경상보조	서울 40-60%, 지방 70-90%
〈노동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1995	경상보조	80%(2009년 100%에서 80%로 조정)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2005	경상보조	30%
사회적기업육성	2010	경상보조	8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c),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편람』, 2010을 참조하여 발췌·정리한 것임

다. 자체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추진은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복지, 빈곤,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저출산 대응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1년에 사회복지예산의 6% 정도를 자체사업에 지출하고 있다. 자체사업예산이 낮은 이유는 지방이양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부담이 커 자체 복지사업을 추진할 만큼의 재정여건이 안된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자체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8〉 사회복지 관련 자체사업 유형과 예산구성(전라북도 사례)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체사업내용	자체사업예산	사회복지 전체예산
전 체		73,109 (5.89)	1,240,168 (100)
지역 복 지	참여형 사회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평가, 단위사업추진경비, 복지콜센터설치운영, 민간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관기능보강, 노숙인쉼터운영, 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회복지중사자처우개선, 보호시설확충, 보호단체지원	16,643 (99.99)	16,644 (100)
빈 곤	저소득층 자녀교복지원, 단위사업기본경비, 자활사업지원	495 (0.08)	627,226 (100)
장애인 복 지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지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재활 및 사회참여사업, 장애인편의증진사업	5,134 (6.66)	77,138 (100)
여 성 복 지	여성취업인력 육성사업, 양성평등사업지원, 단위사업추진기본경비,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취약여성특별지원, 은심미동심 순회서비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양립지원, 한부모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인권보호	1,893 (7.97)	23,733 (100)
보 육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 보육정책 운영관리, 단위업무 추진 기본경비, 보육시설 한마음대회, 다문화매직사업	417 (0.24)	172,568 (100)
청소년 복 지	청소년육성사업지원, 전라북도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단체 국제교류,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청소년비정규학교 운영지원, 청소년보호활동지원	541 (5.36)	10,095 (100)
아 동 복 지	실종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입양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추진경비, 아동행사지원, 아동권익증진사업, 아동급식지원	10,942 (36.59)	29,904 (100)
노 인 복 지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활성화 사업지원, 노인회 사회적 일자리사업, 노인 사회 참여확대 지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추진경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노인건강진단, 무료급식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관 지원, 단위사업추진 기본경비, 재가 노인 복지시설 지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노인복지시설 중사자처우개선, 노인복지시설 행사지원	7,739 (3.05)	253,571 (100)
저출산 대응	저출산대응기반조성, 저출산 대응 도민홍보	24 (8.30)	289 (100)
기 타	행정경비	29,000 (100)	29,000 (100)

자료 : 이종섭·박신규, “전라북도 복지정책, 사업의 감소화와 재정의 효율화 병행해야”, 『Issue Briefing』, vol 32, 전북발전연구원, 2011.3.14, p.5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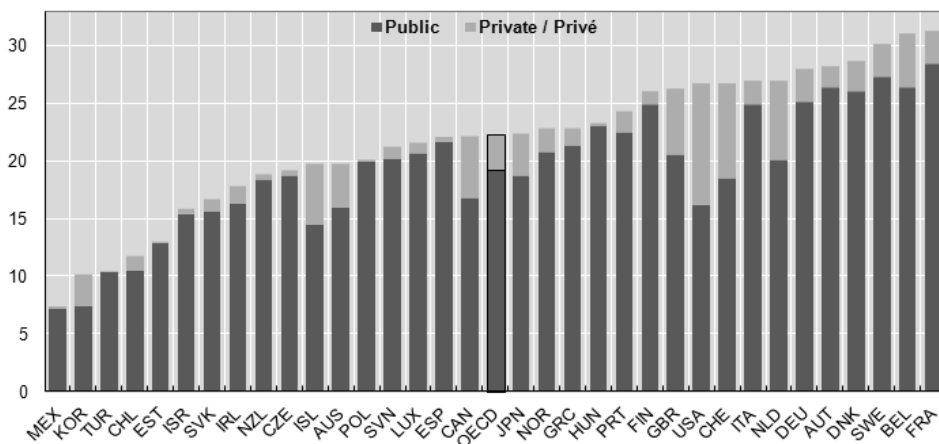
IV. 외국의 복지재정지출의 정부간 분담 구조

1. OECD 국가의 정부간 복지재정지출 분담

OECD 국가의 GDP 대비 총 공공사회지출의 평균 비중을 보면 1980년 16%에서 2007년에 19%로 증가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총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평균 비중은 22.3%로 민간사회지출 3.0%, 공공사회지출 19.3%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사회지출 2.6%, 공공사회지출 7.5%로 GDP 대비 총사회지출은 10.2%로 OECD 34개 국가 중 33위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공공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반면 민간사회지출은 높은 편에 속하여 향후 공공사회지출, 즉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28.6%이며 민간사회지출은 2.9%로 우리나라의 2.6%와 유사하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20%를 넘고 있으며, 일본은 18.7%, 스위스 18.5%, 미국 16.5% 등이며, GDP 대비 총사회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각국의 GDP 대비 공공·민간 사회복지지출 비중(2007)



자료: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각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간 사회복지지출의 관계를 1980년대 후반의 World Bank 자료와 2008년 기준의 IMF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의 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룩셈부르크는 중앙정부가 100%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였으며 헝가리와 인도는 지방정부가 100%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70~80%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반대로 콜롬비아에서는 지방정부가 74% 정도를 지출하였다. 그 외 지방정부가 15~25% 정도 분담한 국가는 이스라엘 24.1%, 유고슬라비아 16.6%, 영국 16.0%이었다.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10% 이하의 재정분담을 하였고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가 80% 이상의 사회복지비를 지출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정부간 사회복지지출(사회보장 포함) 비중(1980년대 후반)

	GDP대비 (%)	정부지출 구성			비고
		중앙정부 (%)	주정부 (%)	지방정부 (%)	
Argentina	9.1	89.4	10.6	-	1987
Australia	9.6	92.8	6.2	1.0	1987
Brazil	-	65.8	31.3	2.9	1987
Canada	12.3	100	-	-	1987
Chile	8.8	90.0	7.8	2.2	1987
Colombia	3.2	26.1	-	73.9	1984
Finland	-	91.8	-	8.2	1987
France	20.9	79.0	10.9	10.1	1985
Germany	21.2	95.7	-	4.3	1983
Hungary	18.1	0.0	-	100	1988
India	2.3	0.0	-	100	1986
Ireland	-	94.9	-	5.1	1987
Israel	10.0	75.9	-	24.1	1986
Kenya	1.4	97.4	-	2.6	1984
Luxembourg	21.3	100	-	0.0	1987
Poland	-	99.3	-	0.7	1988
Switzerland	13.9	88.5	5.6	5.9	1984
United Kingdom	14.3	84.0	-	16.0	1987
United States	9.0	78.0	14.6	7.4	1987
Yugoslavia	7.8	7.3	75.9	16.8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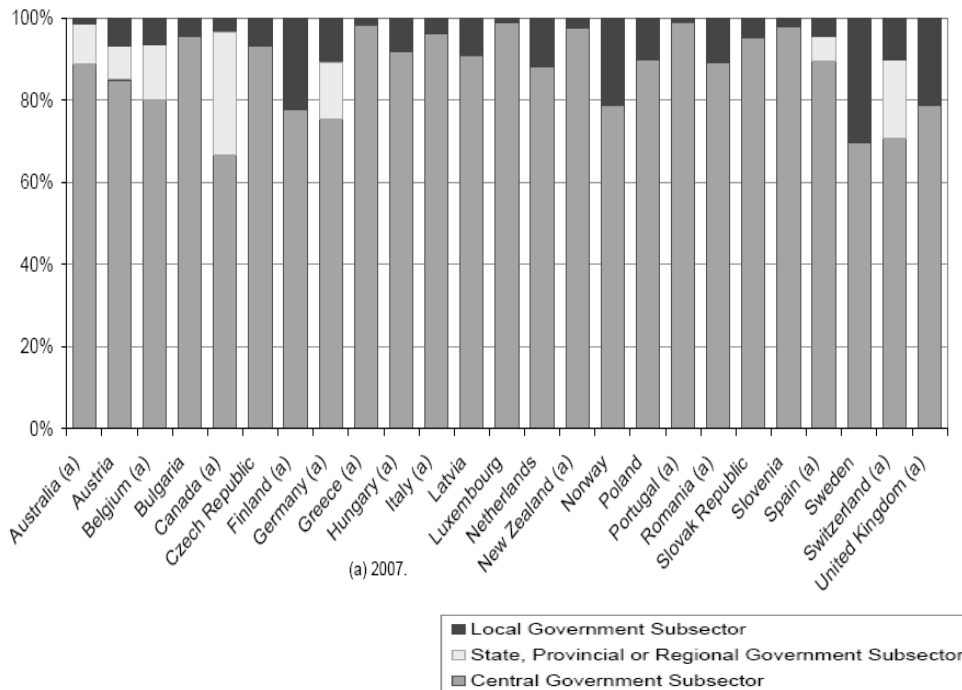
자료 : Robert D. Ebel & Serdar Yilmaz,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World Bank, 1999, pp.25-26

특 집

지방재정의 실태분석

2008년 기준으로 IMF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다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해당 국가의 총 사회복지지출의 10% 이상을 분담하는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정부는 10% 이하의 사회복지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이 5%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방국가인 경우 주정부가 재정부담을 5~10% 정도 하며, 그 중 캐나다의 경우 주정부가 25~30% 정도,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에서 10% 남짓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국가별 정부간 사회복지지출(social protection) 비중(2008년)



주 : 1) 일반정부(공기업 제외) 지출임

2) 정부지출은 개인과 가계에 대한 서비스 및 이전을 포함하며 단체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 포함함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rch 2010; CESifo calculations.

2. 미국의 정부간 복지재정지출 분담

미 의회보고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Social Security, Medicare)을 제외한 소득·자산조사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분야별로 보조금방식 및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 재정분담 현황을 1968~2002년의 35년 기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표 10> 과 같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분담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기간 중 연방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8년 약 70.8%였던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은 1960년대 도입된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 비율은 1979년 77%를 정점으로 반전되어 신연방주의를 표방했던 공화당의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가 집권했던 1980년부터 1992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1992년에는 70.55%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3년에 연방부담 비율의 감소추세는 멈추고 약간 증가하여 2002년 현재 71.46%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1968~2002년의 기간 동안 평균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은 약 71.4%의 수준에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은 1979년 23%로 가장 낮았으며 1992년 약 29.5%까지 높아졌다가 현재는 약 28%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가 사회보험을 제외한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출을 약 7:3 정도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Vee Burke, 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93-195).

<표 10> 미국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포함)의 사회복지재정 규모 추이

(단위:백만달러, %)

회계년도	연방정부		주정부/지방정부		총지출
1968	11,406	70.77	4,710	29.23	16,116
1979	71,336	77.00	21,304	23.00	92,640
1992	211,121	70.55	88,140	29.45	299,267
:	:	:	:	:	:
1995	262,905	70.84	108,210	29.16	371,115
1996	268,823	71.49	107,213	28.51	376,036

회계년도	연방정부		주정부/지방정부		총지출
1997	274,980	71.37	110,312	28.63	385,292
1998	280,965	71.04	114,554	28.96	395,519
1999	291,798	71.31	117,389	28.69	409,187
2000	305,659	71.32	122,897	28.68	428,556
2001	342,877	71.90	133,986	28.10	476,865
2002	373,152	71.46	149,004	28.54	522,156

자료: Vee Burke, "Cash and Noncash Benefits for Persons with Income: Eligibility Rules, Recipient and Expenditure Data, FY2000-FY2002,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5, 2003(<http://congressionalresearch.com/RL32233/document.php?study>)

3. 일본의 정부간 복지재정지출 분담

일본의 지방경비는 행정 목적에 따라 총무비, 민생비, 위생비, 노동비, 농림수산비, 상공비¹⁾ 토목비²⁾ 소방비³⁾ 경찰비⁴⁾ 교육비⁵⁾ 재해구조비⁶⁾ 공채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순계 결산액은 96조 1,064억엔으로, 이의 구성은 아래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생비 20.6%⁷⁾ 교육비 17.1%⁸⁾ 토목비 13.8%⁹⁾ 공채비 13.4%¹⁰⁾ 총무비 11.2%의 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민생비와 노동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도 결산기준 사회복지비(민생비:197,679억엔)는 총 지출의 20.6%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도 결산기준의 사회복지비 비중인 18.7%보다 2%p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생비의 경우 2004년도 총 지출의 16.6%에서 2009년도에는 20.6%로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또한 민생비는 개호직원처우개선(介護職員・遇改善), 생활보호비 증가 등으로 200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1%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1> 일본 지방자치단체 목적별 세출순계 구성비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무비	9.8	9.6	9.7	10.0	9.9	11.2
민생비	16.6	17.3	18.2	19.0	19.9	20.6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위생비	6.3	6.3	6.2	6.1	6.0	6.2
노동비	0.4	0.3	0.3	0.3	0.7	1.0
농림수산비	4.7	4.4	4.2	3.9	3.7	3.7
상공비	5.4	5.1	5.3	5.6	5.9	6.8
토목비	16.7	15.9	15.5	15.0	14.4	13.8
소방비	2.0	2.0	2.0	2.0	2.0	1.9
경찰비	3.7	3.7	3.8	3.8	3.7	3.4
교육비	18.5	18.3	18.5	18.4	18.0	17.1
공채비	14.4	15.4	14.9	14.6	14.7	13.4
기타	1.5	1.7	1.4	1.3	1.1	0.9
세출(억엔)	912,479	906,973	892,106	891,476	896,915	961,064

資料(자료), 總務省, 地方財政白書, 平成23年(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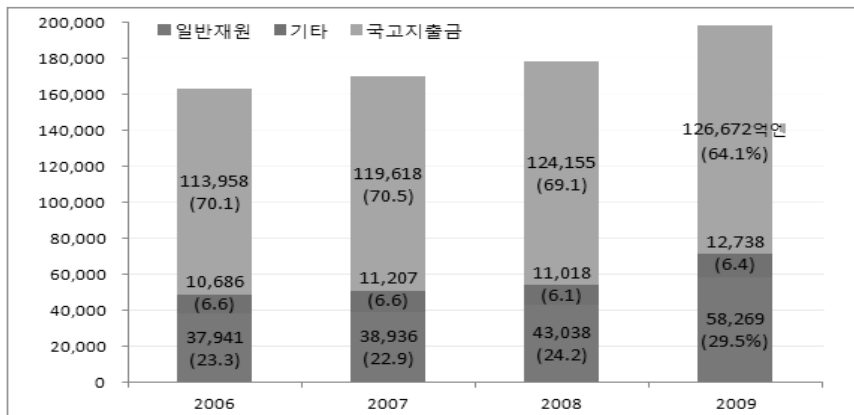
2009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생비 총액 19조 7,669억엔은 노인복지비 5조 7,068억엔(28.9%), 아동복지비 5조 5,497억엔(28.1%), 일반사회복지비 5조 2,509억엔(26.6%), 생활보호비 3조 2,501억엔(16.4%), 재해구조비 103억엔(0.1%)로 구성되어 있다. 민생비는 도도부현에서 31.3%를 사용하고 시정촌에서 68.7%를 사용하였다. 도도부현의 민생비는 노인복지비 44.9%, 일반사회복지비 33.3%, 아동복지비 17.9%, 생활보호비 3.7%, 재해구조비 0.1%로 구성되었으며, 시정촌은 아동복지비 33.1%, 일반사회복지비 25.9%, 노인복지비와 생활보호비에 각각 20.5%씩을 지출하였다.

최근의 일본 지방자치단체 민생비의 재원구성 추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채원 등의 투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시책의 추진, 그리고 국고보조부담율의 인하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증가와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민생비의 재원내역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 국고지출금이 70.1%, 2007년도 70.5%, 2008년도 69.1%로 지방자치단체 민생비의 70%정도가 국고지출금으로 조달되었다. 원래 일본의 경우 민생비의 국고보조율은 80%였으나 1985년 이후 보조율을 70% 내지 50%로 삭감하고 있다. 2009년도의 경우는 국고보조율의 삭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생비 전체의 국가부담은 이전보다 더욱 낮아져 64% 정도이고 지방자치단체 일반채원 등의 부담이 높아져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아무튼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80%에서 70%로 그리고 최근에 64%로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국고부담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림 3〉 일본 지방자치단체 민생비의 재원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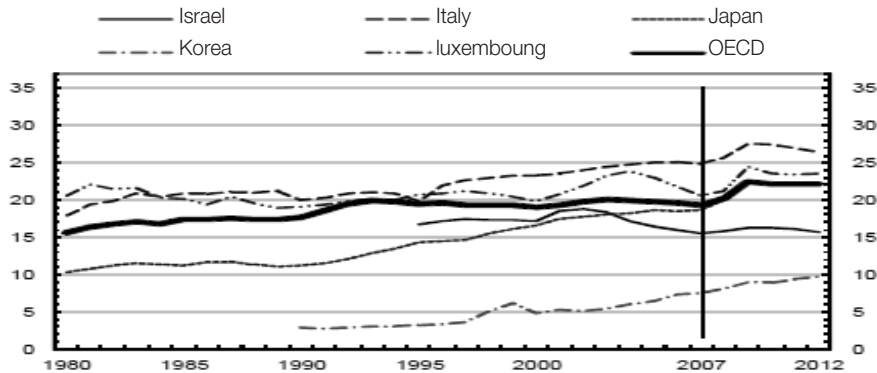


資料(자료), 總務省, 地方財政白書, 平成23年(2011)

V. 결론 및 시사점

세계 각국의 모든 국가에서 사회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원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 등에 비하여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이 낮은 수준에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증가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하여도 높은 증가 추세에 있다. OECD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정부의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을 1980년 이후부터 2002년도까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0% 미만으로 그 수준은 아주 낮은 단계에 있지만 최근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림 4〉 1980년 이후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 증가추이



자료: Adema, W., P. Fron and M. Ladaïque,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OECD Working Paper, No. 124, 2011, p. 11

하지만 사회복지비의 지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의 압박 내지는 재정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국가, 미국, 일본의 경우 복지재정지출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부담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단지 일본의 경우 최근 중앙정부 부담률이 70% 이상에서 국고보조율의 삭감 등으로 최근 60%대 중반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도 예산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 53%, 시도비 27%, 시군구비 20%로 OECD 국가의 선진국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부담이 10%p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기능 중 사회복지 기능의 특성이나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험요소 해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재정지출의 정부간 부담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 참 고 문 헌 >

- 고경환,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 제75호(201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여건과 정부간 복지보조금제도 개편과제”, 『사회복지분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체계 개선』,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 자료집,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영향분석과 구조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 분담방안』, 2006
-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 제35호, 2010.9
- 행정안전부(a),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2011
- 행정안전부(f),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10년 결산 및 ‘11년 운영계획』, 2011
- 보건복지부(a), 『2011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2010
-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OECD Working Paper, No.124, 2011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A Review of CBO’s Activities in 2008 Under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2009.3
- IMF, GFS Manual, 2001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rch 2010; CESifo calculations.
- Robert D. Ebel & Serdar Yilmaz,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Financial Management, World Bank, 1999.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Vee Burke, “Cash and Noncash Benefits for Persons with Income: Eligibility Rules, Recipient and Expenditure Data, FY2000-FY2002,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5, 2003
- Willem Adema, Maxime Ladaiqui, “How Expensive is the Welfare State?, Working Paper, No. 92, OECD 2009
- 栗澤 尚志, “地方財政と福祉-國際比較-”,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大藏省財政金融研究所, September, 1996.
- 資料(자료), 總務省, 地方財政白書, 平成23年(2011)